

##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 제 안 설 명

의안 번호	03269
----------	-------

박춘선 의원 (국민의힘, 강동구3)

-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  
안녕하십니까? 박춘선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9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연서한 「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,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.
- 「서울특별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」가 지난 9월 제정·시행되면서, 생태계교란 생물 조사·관리·홍보 등 관련 업무의 체계가 별도 조례로 정비되었습니다. 그러나 현행 「자연환경보전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」에는 동일한 사항을 규정한 제18조가 그대로 남아 있어, 두 조례 간 중복 규정에 따른 혼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.

-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제18조 ‘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관리’ 조항을 삭제하여, 새롭게 제정된 조례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조례 간 충돌 또는 이중 규제로 인한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고자 합니다.
- 이를 통해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업무를 보다 일원화하고, 정책 추진의 명확성과 현장 집행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.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,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- 감사합니다.